

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 2024.5.20.부터 시행합니다.

□ 추진목적

-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·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*」 시행

*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

□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
※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

□ 본인확인 예외대상

-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⑤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으로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

□ 본인확인 절차

